

보도자료



보도	2019.4.12.(금) 조간	배포	2019.4.11(목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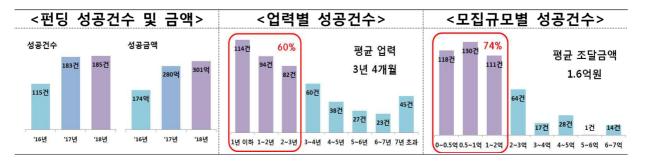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68)
책 임 자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담 당 자	문 상 석 투자금융팀장 (02-3145-7590)
	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 배 혁 찬(02-3774-3106)		정 종 문 중소성장기업지원부장 (02-3774-3501)

제 목 :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

- 지난 3년간('16년~'18년) 417개 창업·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
-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을 공개하고,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등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

1. 주요 동향

- ◇ 3년간('16년 ~ '18년) 총 417개 창업·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(483건)의 자금 조달(건당 평균 1.6억원)
- □ '16~'18년 중 총 **417개 창업·벤처기업**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**755억원**(483건)의 자금 조달
 - '18년 중에는 178개 기업이 301억원(185건)을 조달하는 등 이용
 기업 수 및 조달금액이 꾸준히 증가*
 - * ('17년) 170개 기업, 280억원(183건), ('16년) 110개 기업, 174억원(115건)
- □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**3년 4개월**,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**1.6억원**으로 초기 **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**으로 주로 활용
 -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60%(290건), 2억원 이하 자금조달이 74%(359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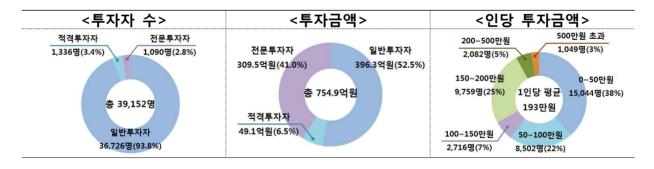
◇ 총 투자자 수는 총 39,152명(중복포함),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

- □ 전체 투자자(39,152명) 중 **일반투자자 수 비중이 93.8**%(36,726명) **투자금액 비중이 52.5**%(396.3억원)로 **일반투자자 비중이 높음**
 - '18년 일반투자자 수 비중은 93.8%(15,623명), 투자금액 비중은 58.7%(176.6억원)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일반투자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

('16.1.25~'18.12.31 기준)

	일반투자자			적격투자자		전문투자자등			전 체			
연도	금액 (억원)	인원 (명)	평균 (만원)	금액 (억원)	인원 (명)	평균 (만원)	금액 (억원)	인원 (명)	평균 (만원)	금액 (억원)	인원 (명)	평균 (만원)
'16년	76.5 (43.8%)	5,592 (92.9%)	137	11.4 (6.5%)	182 (3.0%)	627	86.6 (49.6%)	245 (4.1%)	3,534	174.5 (100%)	6,019 (100%)	290
'17년	143.2 (51.2%)	15,511 (94.2%)	92	19.7 (7.0%)	521 (3.2%)	379	116.7 (41.7%)	440 (2.7%)	2,653	279.6 (100%)	16,472 (100%)	170
'18년	176.6 (58.7%)	15,623 (93.8%)	113	18.0 (6.0%)	633 (3.8%)	284	106.2 (35.3%)	405 (2.4%)	2,622	300.8 (100%)	16,661 (100%)	181
 계	396.3 (52.5%)	36,726 (93.8%)	108	49.1 (6.5%)	1,336 (3.4%)	368	309.5 (41.0%)	1,090 (2.8%)	2,839	754.9 (100%)	39,152 (100%)	19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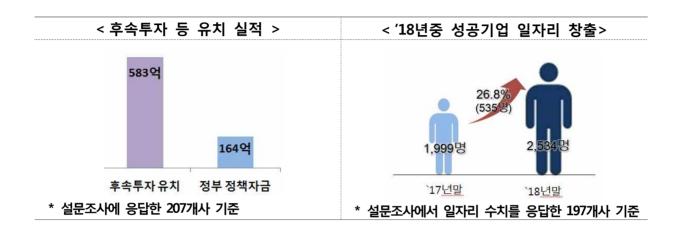
- □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,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
 - **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**를 포함하여, 크라우드펀딩에 **지속적으로 참여**하는 투자자도 다수*
 - *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가 1,332명



→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이 후속투자 등을 유치하였고, 197개 기업은 '18년 중 535명을 신규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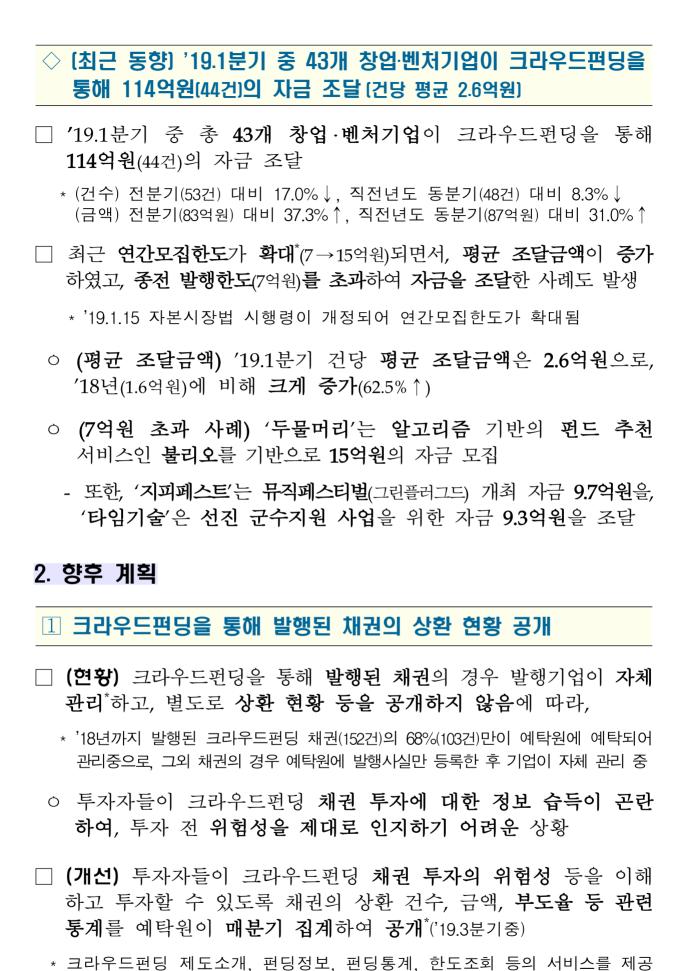
- ※ 전체 펀딩기업 **373개사**(SPC 제외) 대상 **설문조사**('19.1) **시 응답한 207개사 기준** (**일자리수치**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중 **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97개사** 기준)
- □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**92개 기업**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**583억원의 후속 투자금***과 **164억원의 정책자금****을 유치
 - * 이중 60개의 기업이 '18년에만 총 446억원의 후속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임
 - ** TIPS. 한국벤처투자.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.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융자 등

- □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**197개사가 '18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*** (고용증가율 26.8%) **하는 등** 크라우드펀딩이 **일자리 창출에도 기여**
 - * 197개사('18년 창업한 11개사 포함) 기준 '17년 1.999명 → '18년 2.534명
 - ※ '17년 20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1.04%(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)
 - 이 중, '18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(111개사)은 '18년에 380명을 신규 고용*(고용증가율 37.3%)
 - * 111개사 기준 '17년 1,019명 → '18년 1,399명



◇ '18.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 이익이 발생하였고, 27건은 투자손실 발생

- □ '18.12월말 기준 **만기가 지난 채무증권**(88건, 127.3억원) 중 55건은 투자 이익이 발생하였고,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, 6건은 원금만 상환
 - 투자이익 발생 채권(55건) : 발행액 **71.9억원**, 상환액 **77.9억원**, 수익률 **8.3**%(연율 10.5%), 최고수익률* **41.2**%(연율 80%)
 - * 영화 '너의 이름은' 배급사업에 투자하여 관객 376만명 동원으로 추가이자 [기본이율 10%(연율), 추가이율 70%(연율)]를 받음
 - 투자손실 발생 채권(27건*): 발행액 49.6억원, 상환액 17.7억원,
 손실률 64.3%, 원금 전액손실 10건(18.9억원)
 - * 예탁원이 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로, 만기일 미상환 기준이며, 만기일 이후 개별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일부 상환은 미고려
 - 원금만 상환된 채권(6건): 발행액 5.8억원, 상환액 5.8억원



▶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(금융투자협회) 및 시스템 구축(예탁원 등)

중인 크라우드넷(예탁원 운영)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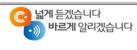
②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

- □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(창업·벤처기업 → 중소기업), 중개 업자에 금산법(§24 등) 적용 면제 등*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'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(현재 법제처 심사중)
 - * '18.6월 '**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**'을 통해 발표
- □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*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'19년내 추진 (현재 입법예고중(3.29~5.8))
 - * '19.3월 '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'을 통해 발표
 - ▶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-+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참고 1

최근('19.1.15)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

- □ 혁신적인 창업·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
 - ① 창업·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
 - ② 크라우드펀딩 **투자경험***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**적격투자자**로 인정하여 **연간 투자한도****를 **확대**
 - *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, 1,500만원 이상 투자
 - ** 투자자별 연간 투자한도: (일반투자자) 기업당 5백만원, 총 1천만원, (적격투자자) 기업당 1천만원, 총 2천만원, (전문투자자) 제한없음
 - ③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
 - * 종전에는 소규모 음식점,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불허
- □ 이와 함께, 투자자가 **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**할 수 있는 화경을 조성하는 등 **투자자 보호 강화** 장치를 마련
 - ① 크라우드펀딩 **투자위험**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**투자 적합성테스트***를 통과한 투자자만 **청약** 허용
 - *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→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(별첨: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)
 -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**신중한 투자결정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최소 청약기간 (10일) 도입**
 -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*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
 - * 모집가액, 발행이율, 자금의 사용목적, 재무제표, 중요한 소송 등
 - **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
 -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**발행가액 산정방법, 자금** 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
 - * 종전에는 발행가액 산정방법,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

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

< 주요 내용 >

현 행	개선안				
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	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				
창업·벤처기업으로 제한	중소기업으로 확대				
② 중개업자 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	② 중개업자 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				
소유 제한, 지배구조법 상 위험관리	소유 제한,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				
책임자 임면 의무 등 적용	책임자 임면 의무 등 면제				
③ 중개업자 의 임직원에 상장증권 등	③ 중개업자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				
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적용	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면제				
④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	④ 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이후				
자문 금지	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허용				
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의 크라우드	⑤ 코넥스시장 상장 후 3년간 은 크라				
펀딩 제한	우드펀딩 허용				

- 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(법률 개정사항)
 - * 다만, 중소기업 중 **충분한 공시 역량**을 갖추고 있고, **소액공모**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**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**(상장기업 등)은 **제외**
- ②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**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**,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등을 면제(법률 개정사항)
 - *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**업무범위**가 단순 **중개행위**로만 **한정**되어 있고, 투자자 재산의 **보관·예탁**도 **금지**되어 있는 점을 감안
- ③ **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**는 일반 중개업자와 달리 **상장증권 중개가 안되**는 점을 고려, **상장증권 등***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(법률 개정사항)
 - * 상장된 지분증권, 동 주권과 관련된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(비상장증권 제외)
- ④ **크라우드펀딩 이후** 발행기업에 대한 **경영자문**의 경우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**허용**(법률 개정사항)
- 5 **코넥스 상장기업**의 경우 공모를 위한 인적·물적자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, 상장 후 **3년간 크라우드펀딩 허용**(시행령 개정사항)
- ※ (법률 개정사항)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, '19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 추진 (시행령 개정사항) 현재 입법예고 중(3.29~5.8)이며, '19년 중 개정 추진